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정식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법률 제18927호, 2022. 6. 10. 공포, 2022. 12. 11. 시행)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,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된 근로자위원 직접선출 및 위원선거인에 의한 간접선출 규정 삭제(현행 제3조제1항 삭제)
- 나. 법률상 근거 없이 근로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10명 이상 추천 요건 삭제(현행 제3조제2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근로자여야 하며, 해당 사업
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”를 “근로자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근로자위원의 선출)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· 비밀 ·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 다만,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선거인”이라 한다)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 · 비밀 · 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	제3조(근로자위원의 선출) <삭 제>
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임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,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 근로자여야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	
연락처	(044) 202 - 7395